

발 간 번 호

서울교육 2015-92

<http://studentrights.sen.go.kr>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목 차

제1장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제도	1
제2장 권리별 상담사례	7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9
제2절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18
제3절 교육에 관한 권리	38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52
제5절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76
제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	85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101
제8절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12
제9절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17
제10절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120



제1장

학생인권의 의미와 보호제도

제1절 인권이란?

인권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긴 어렵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적 생존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규범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를 비롯한 권리조항과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의 개별법령에 따라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인권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2절 학생도 인권을 누릴 수 있나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을 인권의 주체라고 확인하면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까지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국가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의 차원에서 성인과 달리 행동의 제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본 사례집 제1장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상담 사례 중심 알기 쉬운 인권이야기, 2015.2.를 인용하였습니다.

제3절

학생인권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하여 시의회에서 제정되고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참여단 등을 설치하여, 학생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상담과 권리구제, 인권교육, 정책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4절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총칙(제1조~제4조), 학생인권(제5조~제28조),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제29조~제46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47조~제50조), 보칙(제51조), 부칙으로 총 5장 5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절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해 알려주세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등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침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하며, 인권 관련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 선생님도 학교 내의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담

가. 이용 시간 : 월요일 ~ 목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오후 1시)

나. 상담 방법

전화 상담 : 02-3999-081~084

홈페이지 상담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신고 상담게시판
(<http://studentrights.sen.go.kr/>)

대면 상담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로 방문 상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415호)

2. 학생인권침해 구제

가.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신고 상담(<http://studentrights.sen.go.kr/>)란에서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singo@sen.go.kr로 전송

나. 민원접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교육신문고로 접수

제6절 학생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인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완성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개인의 인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 받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거부하는 것은 학생인권 보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2장

권리별 상담사례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설

차별금지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한 것으로, 이들 법규범들에서는 이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자, 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다루고 있다. 조례에서는 이러한 법원칙을 이어받아 학생들을 자의적이거나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동시에, 학생들은 그러한 차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①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국내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결정례

(1) 판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평등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규정은 기회균등 또는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헌재 1989.01.25, 89헌가7).

(2)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① 출석부 ‘남학생 앞 번호, 여학생 뒷 번호’는 성차별

초등학교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성모(여, 34세)씨가 대전소재 ㄸ초등학교장을 상대로 2005년 7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ㄸ초등학교장에게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ㄸ초등학교에서는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에게는 1번부터, 여학생에게는 41번부터 부여하면서, 각 성별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다수 학생들의 남녀 구별관리 등 학생 관리상 편리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 순 등 기타 방법을 고려하여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차별적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2005. 10. 1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차별조사2과))

②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교육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맞게 모든 학생들에게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입시경쟁주의 학문 풍토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이 적절한 교육방식인지의 문제는 논외에 두기로 하고, 공공교육 시설의 일부분을 자율학습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면학실로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교 공교육 서비스의 일환임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됨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그로 인해 특정학생들과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효과가 유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성장 과정에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자율학습 전용실인 면학실의 입실 대상자를 성적우수자로 한정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학업성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다양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면학실에 입실하여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차별적 결과를 가져왔으며, 입실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는 열등감 및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설의 수용한계로 인해 면학실 입실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더라도 이때의 기준은 학업성적뿐 아니라 학습의 지, 정숙의무 등 면학실 운영규정 준수 의지, 학업개선·발달 정도, 교우관계, 특히 가정형편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와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 전용실의 입실자격을 성적우수자로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2008. 8. 25. 08진차158)



5. 상담사례

(1) 성별에 의한 차별

Q1. 선생님이 여자축구부를 비하해요!

우리 학교에는 여자축구부가 있어요. 한 선생님이 아침 수업에 들어와서 여자 축구부 아이에게 “잘해 봤자 니들이 체육선생 밖에 더 하겠느냐”면서 여자축구부를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Q2. 학교에서 여학생은 바지 교복을 못 입게 해요.

딸아이가 원래부터 치마를 입기 싫어하고 바지를 편해하는데 학교 교복은 여학생들의 경우 아예 바지를 못 입게 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 문제로 학교와 갈등하다가 아예 자퇴하고 대안학교로 가겠다고 난리예요. 대체 왜 여자라는 이유로 바지를 못 입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난감하네요.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관련 사례]

-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을 1번부터 부여하고, 그 뒤에 여학생들을 부여하는 경우
-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두발규정을 두어 여학생과 남학생에 대한 두발 규정이 차별적인 경우
- 급식 순서 등 다양한 순서를 정할 때 남학생들이 우선하도록 하는 경우
- 체육 시간에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잘 못하는 종목으로 평가하여 차별의 소지가 있는 경우

조치 및 판단

모든 학생은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는 합당한 이유없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거나 한 쪽 성의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성별에 따른 비하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해당교사에 대해 사과 및 재발방지를 학교에 요청하였습니다.

(2) 성적에 의한 차별

Q3. 성적순대로 자리배치 심한 것 아닌가요?

담임선생님이 성적순대로 자리를 배치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고 있어요. 전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끝자리쯤 앉게 되고, 제 자리를 통해 성적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담임선생님은 창피하면 공부하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또, 평소 수업시간에 좀 늦기만 해도 “××새끼...” 등 욕을 자주하시고, 특히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같은 ××야, 수업준비 태도가 이러니 00등 밖에 못하지” 등 사사건건 성적을 비교하며 모욕적인 말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관련 사례]

- 성적 우수자에게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는 경우
- 기숙사 입사 조건에 성적 제한 규정을 두거나 성적에 따라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경우
- 성적표를 성적순으로 나누어 주는 경우
- 급식을 성적순대로 주는 경우*

조치 및 판단

헌법과 헌법해석상 수학능력과 성적에 기준한 모든 차별 대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별 대우의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을 기준으로 차별하더라도 그것은 성적과 관련된 영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이 자리 배치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재발방지 및 교직원 연수 등을 학교에 요청하였습니다.

(3) 출신국가, 인종,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Q4. “빨갱이” 라고 모욕을 주고 있어요

어느 학부모가 우리 아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것을 안 후부터 “빨갱이”라고 자주 모욕을 주고 있어요

[관련 사례]

- 아버지가 중국동포인데, 담임선생님이 부모님이 외국인이라 한국말을 잘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
- 학교시설물 중 중앙현관, 체육관 사용에 있어 불합리한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조치 및 판단

모든 학생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정 형편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재를 존중하고, 특정한 가족형태만을 ‘정상가족’으로 인정하고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하하는 등 교육과정에서 편견과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손가정’이나 ‘편모가정’, ‘한부모 가정’, ‘애비 없는 자식’ 등 차별적인 언어 사용 등은 없어야 합니다.

* 김상곤, 행복한 학교 유쾌한 교육혁신을 말하다, 2011. p.122.

(4) 임신, 출산, 소수자 차별

Q5. 임신을 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전학을 강요하고 있어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사이에서 임신이 되어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고 두 학생에게 전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관련 사례]

- 임신을 이유로 전학이나 자퇴를 강요하는 경우
- 임신을 이유로 징계를 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하는 경우

조치 및 판단

학교는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소수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 심리적 압박, 특정 외모에 대한 규제나 낙인, 비하나 혐오 발언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학교는 또한 소수자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폭력, 따돌림 등을 중단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참고자료

※ 교육부 「학생 미혼모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점검사항 안내」(학생복지정책과-1861)

- 1) 임신·출산 등에 대한 징벌적 학교규칙 개정
- 2) 학교 밖 미혼모 편입학시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도 활용
- 3)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시설 활용

※ 서울시교육청의 임신 및 출산 관련 당사자 학생들을 위한 조치(학교생활교육과-24686)

- 1) 임신하였거나 출산예정인 학생들이 위탁형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2) 홈페이지와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최근 개정된 학교규칙 탑재 점검(2014.2월까지)

7. 관련기사

- (1) 2015. 9. 11. 조선일보 [‘이성교제시 퇴학’ 교칙을 가진 고등학교가 아직 수두룩하다는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11/2015091101937.html)
- (2) 2015. 2. 12. 경향신문 [법원·검찰 “반(半) 한국인이 김치 왜 못 먹나” 막말 교사 유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122044161&code=940301)
- (3) 2013. 6. 27. 한겨레 [“성차별적 출석부 바꿔주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93602.html>)
- (4) 2014. 9. 30. 광주드림 [광주 스중 학생 성적순 자리배치 “차별행위”]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59613)
- (5) 2014. 10. 30. 아시아경제 [“급식도 성적순으로 먹어라?”…학교 ‘줄세우기’ 관행 여전]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03010222954615>)
- (6) 2013. 10. 1. 매일경제 [“학생 임신, 이성교제 이유로 학습권침해 안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21637>)
- (7) 2015. 3. 3. 중앙일보 [“년 왜 까매” 묻지 않는 사회, 호주도 40년 걸렸대요]
(<http://news.joins.com/article/17262387>)
- (8) 2015. 3. 12. 연합뉴스 [“버젓이 내건 특정대 합격축하 현수막…실태 심각”]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2/0200000000AKR2015031208890004.HTML?input=1195m>)
- (9) 2015. 9. 3. 문화일보 [여성만 뽑아온 항공운항과 “性차별입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5090301071003021001>)
- (10) 2015. 5. 14. 한겨레 [당신이 알아야할 서울사대부초의 ‘미풍양속’]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91195.html>)
- (11) 2015. 5. 6. 한겨레 [국제인권단체 “성소수자 교육 막은 지침 잘못”]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90077.html>)
- (12) 2015. 8. 5. 국민일보 [[다문화가 경쟁력이다] 反다문화 주범 ‘단일민족’ 주입 사라졌지만… 미래세대 교육 ‘차별 코드’ 여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87683&code=11132400&cp=nv>)
- (13) 2015. 8. 5. 국민일보 [[다문화가 경쟁력이다] “짱깨, 너희 나라로 가” 모욕에 충격 학업포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87544&code=11132400&cp=nv>)
- (14) 2015. 8. 5. 국민일보 [[다문화가 경쟁력이다] 외국인주민 175만명·자녀 20만명… 이제는 한식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88133&code=11132400&cp=nv>)

I.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1. 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2. 해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것입니다. 몸의 안전과 자유, 인격 등을 위협받는 경험은 피해 학생에게는 큰 상처를 주고 학교구성원 사이의 신뢰도 깨지게 됩니다. 학교 구성원 누구든 가혹하고 모용적인 폭력을 타인에게 행사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①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

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가.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국내 법령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

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징계기준 (2015.12.18. 개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기관 내 성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7.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매매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라. 성폭력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바. <u>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u> 마. 그 밖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해임 파면 파면 파면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 해임-강등-정직 감봉	견책 감봉-견책 해임 해임 파면-해임 감봉-견책 견책

4. 결정례

(1) 판례

헌법재판소

체벌 금지 이전에도 헌법재판소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교사의 체벌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하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면서 교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6.07.27, 2005헌마1189)

(2)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 ① 체벌은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강정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이 크므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 어깨 등에 막대기 등으로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것은 체벌의 정도 면에서도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이며, 피진정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쿵쿵 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2010. 11. 29. 10진정313700)
- ②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은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기합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피진정인의 행위가 학생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2008년 이후 상벌제(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기압 등 체벌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009. 10. 12. 09진인2034)

5. 상담사례

(1) 체벌

Q1. 담임선생님이 심하게 체벌을 하는데 대처 방법이 없나요?

-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뺨을 때리고,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밀치고 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서 학부모들이 걱정이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집단 기합 등의 체벌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경우가 있었지만 선생님이 체벌 사실을 부인하여 무마된 적이 있어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련사례 및 조치]

- 야간 자율학습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 3명에게 대걸레로 25대 가량을 체벌한 사례
- 학생이 심하게 반항했다는 이유로 정수리와 인근 부위를 체벌한 사례
- 성적을 이유로 반 전체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사례(재발방지 요청)

조치 및 판단

체벌은 인권조례 이전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벌은 인권조례를 넘어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한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유엔아동권위 원회도 우리 정부에 대해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나 대법 원도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잘못된 행위가 있다 면 적법한 절차를 따라 지도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법령 위반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여러 차례 표명 해 왔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체벌 발생에 대해 해당 교사와 학교장에게 시정 및 재발방지,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황과 경중에 따라 학교장을 통한 징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2) 언어폭력

Q2. 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등교거부 사태가 발생했어요.

- ○○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사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아이 가 며칠 째 등교거부를 하고 있어요.
- ○○○교사는 새 핸드폰을 구입한 것을 보고 “너 비싼 스마트폰 샀냐, 밤에 술집 나가냐?” 고 했고, “너 같은 애가 왜 대학을 가냐?” “너는 시집가서 사냐, 못 사냐 해야지” “네가 나중에 애를 낳으면 아마 거지처럼 옷을 입힐꺼야”라는 등의 말로 반 학생들이 있는데서 공개 적으로 모욕감을 줬어요. 이 일로 담당교사에게 항의했지만 일주일도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조치 및 판단

수업이나 학생지도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한 학생지도를 벗어난 인권침해적 행위입니다. 게다가 수업시간 등 공개 장소에서 공연히 행사된 언어적 모욕은 인권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보다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금지되어야 할 인권침해적 행위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신체적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만큼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재발방지와 사과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Q3. 장난으로 공을 가슴에 툭툭 던졌는데, 그 애 엄마가 와서 때렸어요.

놀이터에서 친구랑 놀다가 가슴에 공을 툭툭 던졌는데, 그 애 엄마가 보고 저한테 큰소리 내면서 때려서 아팠어요. 그 애 엄마가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대요.

조치 및 판단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이며, 신고를 통하여 전담기구의 조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친구에게 공을 던져서 폭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의도와 사실을 확인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의 선도조치만을 규정하여 학생 이외의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법의 취지상 피해자가 학생이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먼저 가해를 하였다고 신고된 관련학생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학생이 엄마를 가해자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성폭력

Q4. ○○○선생님이 자꾸 성희롱, 성추행을 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여학생들을 성추행해요. 어깨동무를 하거나 엉덩이를 슬쩍 만지면서 성적 농담을 하기도 하고, 수학여행을 가서는 한 친구에게 “우리 신혼여행 왔지?”라고 하여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거기서 술을 따르게 하거나 함께 노래방에 가자고 종용하는 일도 있었어요.

Q5. 선생님이 수업 중에 공개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요.

남고에 다니는 학생인데, 한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좀 똥똥한 제게 “누가 임신시켰냐? 옆 반 ○○이가 임신시켰지?”라고 했어요. 저도 너무 모욕적이고 옆 반 친구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너무 불쾌하고 정말 화가 났는데 이런 것도 성희롱 아닌가요?

Q6. 걸그룹의 춤을 추라고 강요해요.

피해자의 가족인데요. 학교의 ○○○교사가 수업 중 질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걸 그룹의 춤을 추도록 하고, 못 추는 경우 영상을 촬영하라고 하여 수치심을 주고 있어요.

Q7. 선생님이 제 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어요.

제 딸은 현재 중3인데 친한 친구의 담임선생님이 그 친구 부모님에게 ‘딸이 걸레같이 될 수 있으니 ○○랑 친하게 지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을 제 딸이 전해 들었나 봐요. 그 선생님에게 문제제기를 하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삼자대면이라도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Q8.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딸아이가 같은 반 아이에게 성추행을 당했어요.

초2 딸이 있는데 오늘 학교에서 같은 학급의 학생이 딸의 성기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이 일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네요. 화는 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Q9. 중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집단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어요.

교실에서 친구들이 제 아들을 바닥에 넘어트린 후 팔다리를 잡고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만졌다고 합니다. 제 아들은 그 학생들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잠도 못 자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중학생들의 성적 호기심 운운하며 화해하라고만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잘 처리될지 걱정이 됩니다.

[관련 사례]

- 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 교사가 학생에게 성적 농담이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경우
- 학생들 간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의 팔다리를 압박하고 옷을 벗기거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
- 교제했거나 교제 중인 사이에서 있었던 성적 행동을 한 학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퍼뜨리는 경우
-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경우
- 동성교사가 동성학생을 성추행을 하는 경우
- 교복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여학생의 치마와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

조치 및 판단

수업이나 학생지도과정에서 의도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경우라고 행위자의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성희롱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하여 감사관실에 해당교사의 징계 회부 건의, 행위 금지, 개선지시, 교직원 양성평등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6. 참고자료

(1)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안내 및 준수 요청(학교생활교육과-19007(2015.10.13.))

가.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신고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S 시스템 ☎ 3999-505 - 117(경찰청) - 국민신문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사안 접수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교육과 평화로운학교팀 「성폭력전담관」(☎ 3999-6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교원·교직원 성폭력 모든 사안 ※ 교육지원청 및 본청 해당부서에 사안조사 의뢰
	학교 접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접수한 경우 ⇒ 우선보고 후 즉시 서면보고 - 초·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교육지원청에 보고 - 본청 소속학교, 교육지원청⇒본청 학생생활교육과에 보고
사안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초·중등교육지원과 특별장학(초·중·일반계고) - 중대사안의 경우 행정지원과 감사(초·중), 본청 감사관 감사(일반계고)요청 ※ 대상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초·중등교육지원과 및 행정지원과 공동팀 구성·운영 • 학생 사안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처리하고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처리과정 지도·지원,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밀보장 등 -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 준수 및 처분 적정성 파악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과 특별장학(본청소속교) - 중대사안의 경우 감사관 감사(본청소속교) ※ 대상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생생활교육과 및 초·중등교육과 등 공동팀 구성·운영 • 학생 사안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처리하고 교육지원청에 결과 보고 →처리과정 지도·지원,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밀보장 등 - 학교의 사안처리 절차 준수 및 처분 적정성 파악 지도 <p>※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 본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 침해여부 조사 참여 ※ 중대사안 : 형법상 중범죄, 장기적, 반복적 행위, 가피해자수 다수, 사회적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있는 사안인 경우, 교직원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특별장학 결과 중대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p>

결 과 조 치	• 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과 감사 결과 : 관련자 신분조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지원과 및 재정지원과에 통보 • 초·중등교육지원과 → 초·중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에 보고 • 재정지원과 → 중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에 보고 • 특별장학 결과 → 본청 초·중등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에 보고 • 학생사안 결과 → 본청 학생생활교육과에 보고
	• 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관 감사 결과 : 관련자 신분조치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과 인사팀·교원임용팀, 총무과→학생생활교육과에 통보 • 특별장학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생활교육과 → 초·중등교육과 인사팀, 교원임용팀, 총무과에 통보 • 학생 사안 : 가해학생 조치 여부 파악,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밀유지 확인 지도

나.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시 유의 사항

1.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 :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

[학생생활교육과-4853(2015.3.16.)학교폭력 사안 처리 유의사항 및 사안보고 관련안내 참고]

☆ **학교폭력**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요령

가. 성폭력 관련 신고의무

- 1) 교직원은 성폭력 현장을 보거나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교직원이 성폭력 사실을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3)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67조(과태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9조(신고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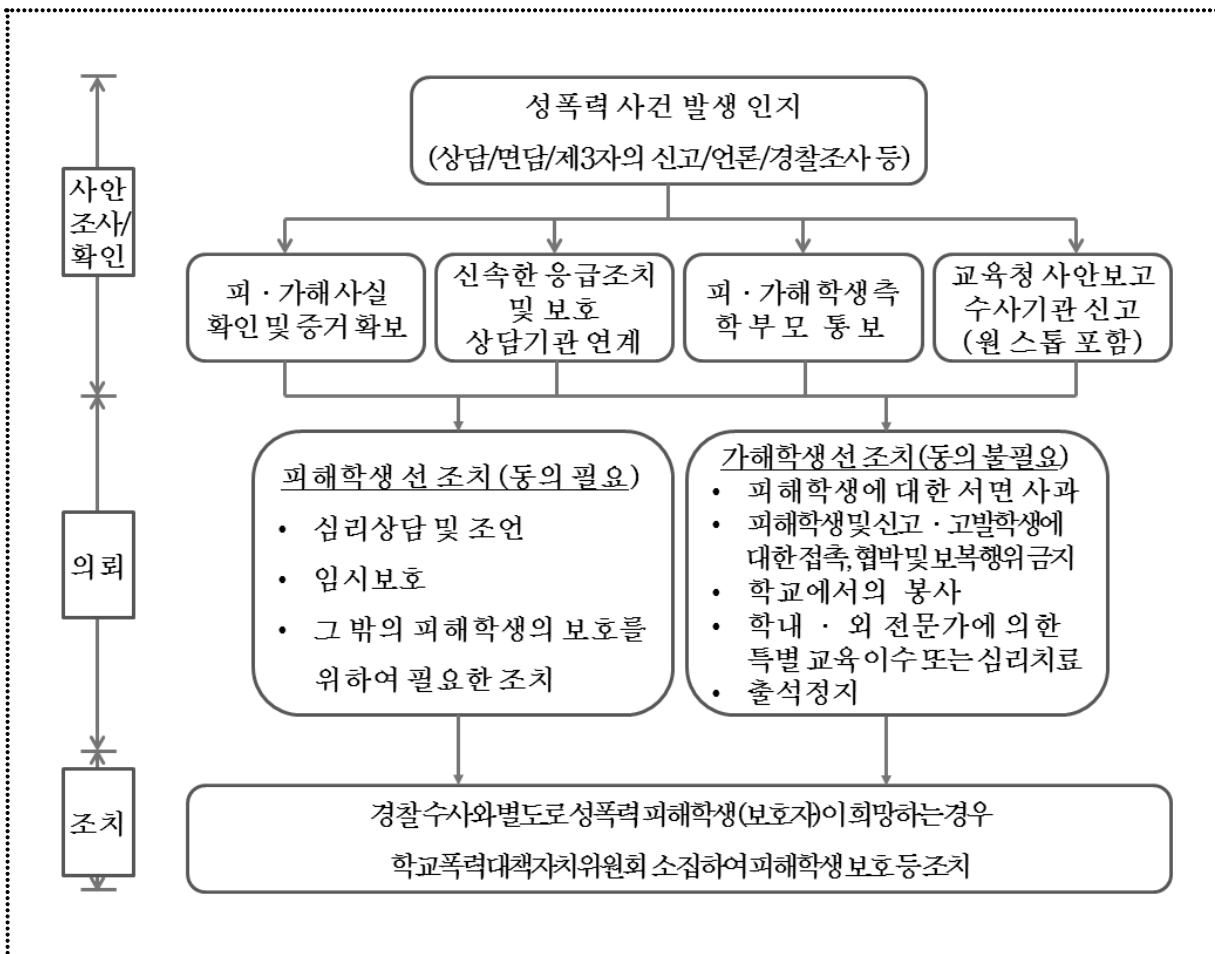
나. 성폭력 관련 비밀누설 금지

- 1)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관련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2) 교직원은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에 실거나 방송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3) 학생들이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일단 안정시키고 성폭력 사실을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시키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 4) 학생들이 성폭력 사건을 목격한 경우 학생들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피해 학생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 5) 성폭력관련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상 징역이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31조(비밀누설 금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다. 성폭력 발생 시 처리 절차[학교]



-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 동의유무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
- 성폭력 관련기관 연계(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시에는 피해자 동의 필요
- 성폭력 피해학생(보호자)이 신변 노출 방지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참석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피해학생(보호자)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 ※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피해학생측의 자치위원회 미개최요청이 있을 시에도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자체가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 생활지도 방안(10.08. 서울시교육청)

○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

1. 도구에 의한 체벌 : (1) 매 (2) 몽둥이 (3) 출석부, 자 등 학습 도구 (4) 기타 유사한 도구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 (2) 양팔을 땅과 수평으로 들고 무릎을 45° 로 굽히고 있기
 - (3)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 (4)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 (5) 앉아서 걷기(일명 오리 걸음)
 - (6)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 (7) 철봉틀에 팔 굽히고 매달려 있기
 - (8) 기타 이에 상응한 활동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체벌 예방 단계적 조치〉

단계	조치	조치 내용	담당자
1	경고/상담	- 교사의 훈계 / 학생 상담	담당교사
2	교실 안 지도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 생각 의자에 앉아 있기	담당교사
3	교실 밖 격리 (Time-Out)	- 성찰 교실 프로그램 참여 · 방과 중 자기주도학습 실시 · 방과 후 잔류 지도	교감 전교직원 역할분담 전문상담인력
4	대체 프로그램 이행	- 대체 프로그램 미이행 시 재지도 - 지도 불응 시 징계 경고 - 학교관리자 면담	생활지도부 학교관리자
5	징계	-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학교관리자

<체벌 발생 시 조치 (경미한 사항)>

단 계	내 용	세 부 내 용	담당자
1단계	신고	교감에게 체벌 신고	
2단계	조사	사실관계 조사 및 해당교사 소명	교감
3단계	중재	교사·학생 간 중재 및 화해 유도	교감
4단계	조치 (연수)	*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 방학을 이용해 자비 연수 이수 명령 (분노 관리 및 대화 방법, 분쟁 해결 및 명상·상담, 평화교육 등의 프로그램) * 학교장의 구두 주의, 경고 등 조치	학교장

<체벌 발생 시 조치-심각한 체벌(폭력) 발생>

단 계	내 용	세 부 내 용	담당자
1단계	조치	사실관계 조사 후 학교장의 서면조치(주의, 경고)	학교장
2단계	조치	특별장학, 감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징계	교육장, 교육감

※ 학생에 대해 명백하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적 조치를 취함.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한 경우

체벌 금지 시에도 교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학생 간 폭력 또는 교사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무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 위한 행위 등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의 물리력 행사는 가능합니다.

7. 관련기사

- (1) 2012. 08. 30. SBS [광주 중학교 교사가 상담실서 제자 성추행 파문]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354027&plink=OLDURL)
- (2) 2012.10.29. 뉴시스 [초등교사 신체검사 중 여학생 추행 의혹]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029_0011561801&cID=10807&pID=10800)
- (3) 2012.10.11. SBS [학생·교사 성추행한 초교 교감 구속]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427300)
- (4) 2012.08.30.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에서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직위해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8/30/2012083001394.html)

- (5) 2012.07.25. 연합뉴스 [‘제자 성추행’ 혐의 고교 교사 잠적 7일만에 체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5/0200000000AKR20120725122900064.HTML?did=1179m>)
- (6) 2015.07.30. 헤럴드경제 [못된 교사 5명, “황진이~춘향이”불러가며 女교사·제자 상습 성추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30000812&md=20150730144033_BL)
- (7) 2015.08.06.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사 명단공개 후 바로 퇴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6/0200000000AKR2015080608350004.HTML?input=1195m>)

II.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1. 조례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2. 해설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안전사고의 원인을 학생의 부주의 문제로만 축소해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수업시간 외 운동장 이용 금지 등 학생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학생들의 휴식할 권리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은 사전 안전교육, 안전장치 구비와 안전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처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진행할 때에도 안전 시스템의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학교는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3. 국내외규범

(1)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국내법령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5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①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등은 다음 각 호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상담사례

Q1. 학교 내 배수구에 넘어져 치아가 부러졌어요.

학교 중 친구가 뒤에서 밀어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뚜껑이 빠진 배수구를 피하려다 놀이기구에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졌어요. 다친 것도 속상한데 상대방 부모님이 치료비를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사과보다는 회피만 합니다. 담임교사에게 말해보았지만,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어서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하고 있어요. 교육활동이 아닌 교육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학교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Q2. 제 아들이 급식시간에 급식을 받으러 가다가 누군지 모르는 여러 학생들이 뒤에서 밀어서 복도에 있던 의자에 부딪치고 이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3. 월담을 방지할 목적으로 가시 철주를 설치할 것은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관련 사례]

- 페인트, 바닥재 등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 교실 창문이나 복도 난간에 추락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 높은 놀이시설 아래 모래 등 충격 흡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골대나 농구대 등 운동기구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안전유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안전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의 책임을 당사자나 교사 개인에게만 돌리는 경우
- 과학 실험실에서 위험물질을 다룰 때 안전장치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
- 위험물질이 가득한 과학실험실에 학생들끼리 있도록 방치하는 경우

조치 및 판단

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나 학교장이 관리·감독의 법률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교육적 입장에서 윤리적인 지원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시정 및 조정과 중재의 노력이 필요함을 안내드렸습니다.

5. 관련기사

- (1) 2015. 3. 9. 국민일보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중']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986896&code=11131300&cp=nv>)
- (2) 2015. 9. 22. 내일신문 ["학교, 안전사고에 무방비 노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66953)



I. 학습에 관한 권리

1. 조례

-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 상담, 돌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일시적 장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예체능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다른 학생과 비교되지 않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을 과도하게 경쟁시켜 학생들의 학습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 교직원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실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이 달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누구든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학칙과 법령에 근거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균등한 기회 제공을 기반으로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상교육을 도입하거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2. 국내법령

헌법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결정례

헌법재판소

- ① 국민의 수학적권(헌법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민의 수학적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수학적권의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헌법 제10조 전문)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헌법 제34조 제1항)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의무교육의 무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보장, 평생교육진흥, 교육제도 및 교육재정, 교원지위 법률주의 등은 국민의 수학적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헌재 1992.11.12.89헌마88)
- ②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다25298)

5. 상담사례

Q1. 교문에서 돌려보내서 수업을 못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등교하는데 교문에서 “치마가 짧으니 치마를 사 오라”며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문에서 쫓겨나서 몇 명이 1, 2교시 못 들었어요. 결국 저는 선생님들 들어가신 후에 몰래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고 교문 앞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 보니까 속상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업도 못 듣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치 및 판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선도나 교육적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권 중의 하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이므로 학생지도를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가급적 수업 외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례는 복장의 지도가 수업을 배제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고, 복장 지도에 대해 학교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임에도 임의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학생지도나 조사를 위해 수업배제가 필요한 경우]

- 1) 수업을 배제하고 학생지도 또는 조사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가?
 - 사안의 중대성 : 학교 규칙 위반 사안의 복잡성과 중대성
 - 사안의 긴급성
 -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방과 후 조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
 - 대면조사가 장기간 필요한 사안
- 2) 적법한 수업배제 조사가 되기 위한 요건은?
 - 학생지도 계획 문서의 작성 : 목적, 수업배제의 긴급성과 필요성, 일정 및 방법,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간단히 언급한 문서를 작성
 - 학교장의 사전 결재(또는 사후 승인결재)
 - * 유의점 : 수업배제를 통한 학생지도나 조사가 학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보호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통지



II.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1. 조례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학생에게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해설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신장시킬 기회를 가지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선택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방과후 학교 수업(특별히 교과수업)이나 야간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의 진로 계발에 필요할 경우 방과 후 학교 수업이나 야간 학습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수는 있으나,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선택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국내규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인격권

4.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을 참여시킬 경우 학생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이탈 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 때문이다.(2009.12.01. 09진인3240)

5. 상담사례

Q1. 자율학습이나 방과 후에 빠지면 벌금을 내야 해요.

우리 반은 자율학습 참여 횟수로 순위로 매겨 제일 아래 있는 5명은 2~3주 정도 급식당번, 주변, 칠판닦이, 특별구역 청소, 교실청소 등을 해야 하고, 2만원씩 돈을 걷어 반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도록 강요당한 적도 있어요. 자율학습 하겠다고 한 날 나가지 않으면, 한 교시 당 천 원씩 돈을 걷고, 반성문을 써야 해요. 또 방과 후를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해서 정해진 양만큼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요. 왜 이런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Q2. 0교시에 풀었던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녀가 아침시간에는 너무 피곤함을 호소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워낙 힘들어하여 학교에서 학기 초에 0교시 수업 신청을 받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문제출제를 할 때 0교시 수업에서 풀었던 문제가 나와서 너무 화가 납니다. 학기 초에 학교에서 분명히 0교시 수업에서 풀이한 문제를 시험에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Q3. 선생님이 방과후교육 신청 3개 이상 하라고 강요해요.

선생님께서 방과후 총 3과목 중 2과목 이상 꼭 신청하라고 하셨고, 오후에 있는 야자의 경우 총 116회라고 하는데 이 중 반 정도인 50회를 꼭 채워서 신청하라고 지난 주 목요일에 얘기했고, 금요일까지 신청서를 받아갔습니다. 방과후의 경우 신청서 내는 날 ‘30분 안에 2개 이상 체크해서 내라. 안 한 학생은 문자를 받게 될 것이고 문자를 받은 학생들은 벌금을 내라’고 하셨고, 야자의 경우 지시대로 안 할 경우 ‘결과에 따라 상과 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반에서 자잘한 벌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Q4. 0교시 수업을 강요해요.

우리 학교는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아침 영어듣기와 신문읽기교육을 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규수업처럼 참여를 강요해요. 자는 애들은 일부러 깨우고, 담당 선생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공부 하는 학생들에게 다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따지고 보면 이런 건 불법적인 0교시 아닌가요?

Q5. 선생님이 자기가 제시하는 사교육을 받으라고 강권해요.

학교에서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인데, 선생님이 자꾸 “대치동 가서 내가 짜준 대로 공부하라”며 사교육을 강요하고 계십니다. 제가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는 수업하실 때 제가 반장이라 인사를 하려고 하면 “쓰레기가 하는 인사 안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저를 차별하십니다. 어머니와의 상담 때도 “현실감이 없다”며 나무라셨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관련 사례]

- 야간자율학습에 빠지려면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조치 및 판단

학교 내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것은 정규 교과 외 수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학교가 자율학습을 실시하려면 중등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보충수업 형식의 자율학습, 선행학습 또는 교과 진도 반영, 동의에 의하지 않은 강제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특별장학, 특별감사, 예산지원 제한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6. 관련자료

관련 지침

- ①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 계획」
(학교혁신과-22894)
- ②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 계획」
(학교혁신과-22909)
- ③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계획 (학교혁신과-332)
- ④ 2015 방과후학교 길라잡이(방과후학교지원센터(<http://afterschool.sen.go.kr>))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 학습참여 강제유도사례 지도 계획]

□ 지침 위반학교 판단기준

-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과후학교 또는 자율학습
 - 학교 방침 또는 교육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학교 또는 담임(교과)교사가 방과후학교 또는 자율학습 참여를 강제로 권하는 경우
- 정규 수업 시간에 이어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충수업 형식의 방과후학교 강좌 또는 자율학습 시간
- 학년별로 학생 전체를 정규 일과시간 시작 시각 기준으로 30분 이상 전에 등교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상으로 교육청에 민원이 1회라도 제기되는 경우(특별장학반 확인)

□ 대표적인 부적정 사례

-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 계획에 의거 획일적으로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자율학습을 운영하는 사례
- 학생 전원의 참가를 전제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에 한하여 제외시키는 사례
- 방과후학교 강좌의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교과 진도 및 평가에 반영하여 방과후학교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
- 학생·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생의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 학생의 희망에 반하여 일정기준의 성적이나 등수의 학생에게만 차별적인 교육과정이나 자율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례

□ 지침 위반학교 조치 강화

- 1단계 : 특별 장학지도 시행
- 2단계 : 종합감사 의뢰
- 3단계 : 행·재정적 제재
 - 2회 이상 감사의뢰 조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Ⅲ. 휴식권

1. 조례

제10조(휴식권)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 해설

휴식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이며, 감당할 만한 교육은 학습권 실현의 주요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생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학습시간도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과 후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놀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할 권리도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4. 결정례

헌법재판소 판례

- ①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 ② 헌법재판소는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면시간을 확보하려는 등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9.10.29. 2008헌마635)

5. 상담사례

Q1. “쉬는 시간에 화장실만 다녀올 수 있어요?”

“쉬는 시간에 밖에 못나가 화장실만 다녀올 수 있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떠들면 반장이 이름 적어 담임선생님한테 일러 교실 뒤에 있는 장난감도 만질 수가 없어요.”

Q2. 점심시간에 교실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게 해요.

담임선생님이 점심시간에 교실에 못 들어오게 문을 잠가요. 선생님은 쉬는 시간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교실이 아니면 설 데가 없어요. 밖에 나가면 너무 피약벌이라 오히려 힘들어서 교실 안에서 쉬고 싶은데, 잠긴 문 앞에서 항상 기다리는 저희를 보시면서도 안 열어주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치 및 판단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업 후 쉬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사정이 없다면 학생들에게 수업 간 보장된 쉬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IV.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1. 조례

제11조(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 해설

「유엔 아동권리협약」제31조에서는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향유는 문화를 창작할 권리,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문화를 즐길 권리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시간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는 학교 축제기획,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구축한 문화 프로그램, 창작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창조성, 예술성 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문화 동아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 의견의 수렴이 중요하고, 예산지원이 필수적입니다.

3. 국내의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2) 국내규범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 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여가활동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는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심신과 정서를 성장·발달시키며,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임.

법적 근거로는 「헌법」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항),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제34조)등에서 찾을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

력해야 한다고 규정.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하여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과 관련된 조항을 학교생활규정에 담아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의 현상이 되길 바람.

여가활동과 관련, 학교 측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가하여 능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교지와 학교신문 발행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지언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2002. 9. 9.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5. 상담사례

Q1. 학교에서 체험 활동을 해야 할 시간에 영어수업을 편성해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영어 회화 수업을 운영합니다. 한 분기에 88,500원을 더 내게 하고, 실제로 영어회화도 아니고 문법수업을 합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1학년들은 그 시간에 악기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2학년은 가뜩이나 시간표에 많은 영어를 한 시간 더 하라고 하니 참 괴롭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는 이런 교과목 공부보다는 문화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련 사례]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같이 문예활동 증진을 위해 편성해야 할 시간에조차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 미술, 음악, 체육수업을 변칙적으로 운영하여 그 시간에 국영수를 공부하게 하는 경우
- 학생들의 동의 없이 축제, 수학여행, 운동회 등의 문예체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경우(일회적인 전학생 행사로 하지 않고 각 반의 자율적인 행사로 운영하는 경우 제외)
-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축제, 수학여행, 운동회 등을 취소하는 경우

조치 및 판단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에 따르면 체험활동에 문화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업교과에 관련되어 편법적 운영이나 교과 관련 심화학습 운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축제, 지역사회와 연계한 문화프로그램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관련기사

- 2008. 9. 10. 노컷뉴스 ["운동장 좁아서...공부 때문에..." 가을운동회가 사라진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3776>)

I. 개성을 실현할 권리

1.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해설

본 조항은 복장, 두발 등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용모의 제한으로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학교에서는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복장 및 두발규제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 및 표현의 자유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 그동안 소모적인 학생과 교사와의 갈등의 소지였다는 점에서 조례는 두발, 복장의 자유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간의 소모적인 갈등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과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이 대체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학생들의 탈선과 문제행동은 줄어들 것입니다. 흔히 자유화라고 하면 학생들이 염색을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강제입니다. 자유화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머리모양이나 복장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신이 각자 자기 개성이나 특성에 맞는 생활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자기 몸과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복장의 경우 학교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목적 하에 자율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두발이나 복장 등의 용모가 학생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교육적 지도나 상담, 혹은 집단토론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제재수단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내규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1) 판례

헌법재판소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헌재 1990. 1. 15. 89헌가103, 판례집 2, 4)

(2)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 없이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을 헌법 제10조의 규정한 행복추구권상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이발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 침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두발의 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등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 및 교육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에 대해 일정 제도의 제한 필요성은 있으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상 곱슬머리의 여학생 등의 경우 머리를 묶고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두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정으로 교육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2005.6.27. 05진차204, 145, 119(병합) 결정)

5. 상담사례

Q1. 신발과 양말까지 깔 맞추하래요.

겨울에 구두만 신으면 너무 춥고 미끄러워 위험하다고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하지만 학교에선 여전히 묵묵부답이네요. 신발은 검정구두, 양말은 하얀색 왜 이렇게 깔 맞추을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용의복장규정이 우선시 되는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Q2. 제 머리는 “자연머리”예요.

저는 염색을 하지 않은 곱슬이 심한 자연머리입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잦은 욕설로 전체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감을 주고 있어요. 전 두발문제로 1, 2학년 때 이미 학교에 염색이 아님을 증명한 바 있지만, 담임선생님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라고 합니다.

Q3. 브래지어 색깔도 문제가 되나요.

수학여행 중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속옷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에서 여교사가 속옷을 주무르고 펼쳐보는 행동으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학교 내에서 여학생들의 속옷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엉덩이를 더듬고, 브래지어 색깔을 논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는 생활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기관인 ○○고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조치 및 판단

학생의 두발의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조례 제12조에서 학교에서 두발에 대해 규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두발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입장입니다. 두발에 대한 생활지도는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정리할 것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조치 및 판단

교복의 경우에도 일부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문이나 현관, 심지어 교실에서 일괄적인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지도는 집단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복 미착용, 지각이나 무단결과 등 학교 교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단속하여 학업분위기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전체를 잠재적 교칙 위반자로 취급하는 일괄 단속이나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발의 색상, 양말의 색깔까지 단속하는 것은 인권적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일관적인 단속 형태의 학생지도는 지양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은 2차적 인권침해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생인권조례 적용 원칙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안내」〈책임교육과-2280(2012.02.03.)〉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
- 「학생인권 증진과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안내문」〈민주시민교육과-2866(2015.3.19.)〉

6. 관련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침
 - 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안내」(책임교육과-2280)
(2012.02.03)
 - ② 복장, 두발 등 학생인권조례 위반사항 대응 방안(책임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2012.03.09.))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사항 및 학교규칙 정비 안내(책임교육과-12585)

7. 관련 기사

- ① 2015. 10. 18. 전북일보 [‘전북 학생 인권 현주소’ 주제 학생 토론마당] “두발·복장규제 합당한 이유를”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3443>)
- ② 2015. 10. 14. 부산일보 [‘이성에 문자만 보내도 징계’ 학생 인권침해 학칙 손본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1015000114#none>)
- ③ 2015. 5. 14. 동아일보 [대법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자유’ 전북 학생인권조례 적법”] (<http://news.donga.com/3/all/20150514/71250441/1>)

II. 사생활의 자유

1. 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 참여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학교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미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해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아의 독립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권리입니다. 학교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단생활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생활 보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사생활의 의미도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학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국내규범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4. 관련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①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2005.03.25. 국가인권위원회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관련 의견)

②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 기관의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피진정 기관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에 따른 경우 피진정 기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까지이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

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변 및 기숙사에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지만, 피진정 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수가 361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6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전화 가 설치된 장소 또한 매우 개방된 곳이어서 학생들이 부모 또는 친구들과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사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를 하는 학부모 등이나 전화를 받는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2010.10.29. 10진정298600)

5. 상담사례

Q1. 담임선생님이 제 가방을 뒤져 화장품 파우치를 가져갔어요.

학교 전체가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수준별 수업 때문에 교실이동을 하여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교실에서 제 가방을 뒤져 화장품 파우치를 가져갔어요. 현재 학칙에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는 되어 있어도 화장품을 학교에 가져오면 안 된다는 교칙은 없어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소지품 검사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었나요?

[관련 사례]

- 설명도 없이 주머니를 뒤져서 향의를 했더니 지도불응으로 선도위에 회부한다고 합니다. (흡연 관련)

조치 및 판단

학교에서 흡연과 관련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라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학생이 동의 절차를 거쳐 비공개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성에 의해 실시되는 소지품 검사는 성추행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양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학생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교칙 등에 위배되는 물건 또는 안전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는 화장품을 압수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흡연과 관련된 소지품 검사의 경우 교칙에 반하는 물건을 소지한 것으로 심각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도 대상학생이 강력히 거부를 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보다 거부 행위가 학생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더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또는 주기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하게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 경우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지품 검사는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실시하며, 학생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학생들과 분리된 장소에서 신속하게 합니다.
- 소지품 검사 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별이 같은 교사가 검사해야 합니다.
- 소지품 검사 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검사가 끝나면 소지품을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정돈하여 두는 등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판단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Q2. 영어 일기쓰기를 담임교사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일기장 검사는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요?

초등학교 학부모인데요. 자녀의 영어 일기장을 담임교사가 검사한다고 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즉각 중지하도록 해주세요.

Q3.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일기장 검사를 거부했더니 담임선생님이 그 후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일기장 검사와 관련해 동의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일기장 검사에 동의 안한다고 답변을 보내자 아이의 담임이 “스티커 안 줄 거야”라고 하며 아이 앞에서 못마땅한 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일기장 검사가 있는 어느 날 일기장을 안 가져가자 “너 스티커 떼”라고 하여 옆 친구가 일기장 검사를 하지 않는 학생이라 설명하니 다시 붙여줬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자 아이가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더군요. 너무 속상하고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치 및 판단

학교에서 글쓰기 능력향상과 바른 생활 습관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일기쓰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기장 검사의 경우 학생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기장 검사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에서도 학생의 동의가 없이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학생지도나 교육의 방식으로 일기쓰기를 과제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를 검사하는 등 행위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Q4. 수업시간에 들고만 있었는데 휴대전화를 한 달 동안 압수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인데요. 우리 학교는 수업 전 휴대전화를 수거함에 제출해야 하는데, 깜빡하고 제출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선생님께 적발 되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한 달 동안 압수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및 판단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수업방해는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 사용과 제한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은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된 학교 규칙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처럼 한 달간 휴대폰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한 휴대전화 제한의 문제를 넘어 학생 개인용품의 부당 압수 문제로까지 야기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수업의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지만 휴대전화의 압수 등의 조치는 임시적이고 단기적 조치로 행사되는 것이 적정하며 교사의 임의적 조치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해설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pmp, 태블릿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현대사회에서 통신 및 호신, 여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는 학생들에게 통신, 대인관계 형성, 취미 활동, 호신 수단 등으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소지 자체의 금지 등 엄격한 규제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전자기기의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고 시간·장소에 따라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전자기기 사용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정도는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규칙을 어긴 경우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사생활 존중, 안전한 귀가 등을 위하여 당일 본인에게 전자기기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선생님이 남자친구와 있으면 풍기문란이래요.

남자친구와 오래 사귀어 왔고, 그런 커플이 학교에 몇 있어요. 그런데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풍기문란죄’로 부모님을 소환했어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성교제가 무조건 잘못된 거냐’고 질문하니 엄마 앞에서 “너네 생각을 확대해보면 연인이 옷 벗고 길거리에서 뽀뽀하는 거랑 같다”고 말해서 수치심까지 느껴졌어요. 그 이후 다른 선생님들은 ‘너네는 조심하는 게 보인다’며 인정해 주시는 분위기인데 유독 그 선생님만 ‘붙어있지 말라’며 선도위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조치 및 판단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교제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 징계에 해당 할 수 있으며, 학교 규칙을 통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선생님이 ‘저 아이와 놀지 말라’고 한다고 해요.

자녀가 휴일에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졸업생 선배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 담임선생님이 자녀의 친구에게 “저 아이와 어울려 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요. 같이 이야기 하고 있으면 일부러 심부름을 시키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아무리 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해도, 친구관계까지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 거 아닌가요? 자녀가 너무 속상해 해요.

Q7. 자녀의 친구들이 딸의 다이어리를 뒤졌어요.

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반 친구들이 딸의 다이어리를 뒤져서 내용을 보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딸애가 싫어하는 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 친구들이 공개적으로 낭독을 하고 돌려본 뒤 딸애를 따돌림까지 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딸애의 친구들이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딸애가 공격을 당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교사가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가르치고 적절하게 개입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Q8. 선생님이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문자를 확인해요.

수업시간에 선생님 허락을 받고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부르더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라고 하셨어요. 휴대폰을 보시더니 소지금지 규칙을 어겼으며 생활지도부실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억울했지만 규칙이라 쓰고 있는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라고 하더니 문자를 뒤져보는 거예요. 진짜 화났어요. 진술서 다 쓸 때쯤 문자가 왔는데 이번에는 알아서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선생님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조치 및 판단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사가 선입견을 가지고 학생의 인간관계 형성을 방해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등을 보는 행위는 학생의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많습니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긴급한 목적에 의해 다이어리와 휴대전화 등을 보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내용을 낭독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인권 침해 구체적 사례

- ① 일기(다이어리), 교환일기, 편지 등 학생들의 기록물을 교사가 수거, 열람하는 경우
- ② 교사가 학생에게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로그인하여 내용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 ③ 학생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교사가 확인하려고 공개를 강요하는 경우
- ④ 사적기록물을 동의 없이 열람하는 일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

6. 관련자료

(1) 사생활(사적관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칙 사례

○ ○○고 학생선도규정 제3장 징계 中

제11조(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3.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중 생활지도규정 체벌 관련 규정 中

제10조 (매-교내봉사 전 단계의 징계) 4. 매로 체벌하는 경우

(4)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반복할 때

※ 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2011.3.18. 개정)

(2) 이성교제를 학칙의 '징계' 영역에 두지 않은 사례

- ○○중 학생선도규정 제5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中 제31조(이성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이성 간 예절을 지키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3.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4.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부 지침

교육부는 휴대전화와 관련 '일부 학교에서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벌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라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교육부 학교복지정책과-2919, 2014.5.19. 참조)

7. 관련기사

- 사생활(사적관계)의 자유 침해 관련 기사
 - ① 2010. 11. 17. 한겨레 [이성교제 3번 걸리면 퇴학...“사랑은 19금이 아닙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8998.html)
 - ② 2011. 11. 17. 이데일리 [[와글와글 클릭] 청소년 '연애 탄압'.."지금이 조선시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5&newsid=01607206593166704&DCD=A01607&OutLnkChk=Y>)
 - ③ 2011. 11. 17. 경향신문 ['연애하다 걸리면 퇴학...' 학생들 연애 탄압 사례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1171213131&code=940401)
 - ④ 2012. 08. 07. 기호일보 [학창연애... 학부모는 불안 학생은 당연]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545>)
- 일기 검사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기사
 - ① 2005. 04. 07. 오마이뉴스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아동인권 침해 소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0407123042644>)
 - ② 2005. 04. 07. 연합뉴스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인권 침해"]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0407102606698>)

- ③ 2005. 04. 07. 국민일보 [교육부 “일기검사 안할 것…일기쓰기는 계속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50407025530129>)
- 휴대전화 단속 및 압수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 기사
- ① 2015. 3. 23. 경향신문 [기숙학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인권침해…국가인권위 완화 권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230847451&code=940100)



Ⅲ.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1. 조례

- 제14조(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병력, 징계기록, 교육비 미납 사실, 상담기록, 성적지향 등의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할 경우에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개인 정보를 조사하거나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정보가 타인에 함부로 누설되고 그로 인해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름표에 기재된 성명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교외에서까지 이름표착용을 강제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식 명찰을 지양하고 탈·부착이 가능한 이름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3. 국내의 규범

(1)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국내규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결정례

(1) 판례

헌법재판소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판례집 17-2, 81, 90).

-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 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 두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등, 판례집 17-1, 668)

(2)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 ① 피진정인들은 학생들에게 형겅재질의 명찰을 교복의 가슴부위에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은 등·하교 시에도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 고정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판단컨대, 학교 안에서 교복에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학생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2009.10.26. 09진인 1542, 1543, 1545,1546, 1547, 1548 병합)
- ② 가. 각 개인의 성명은 그 자체가 비밀성이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나. 학교 안에서 명찰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학생 당사자의 개인정보의 침해의 소지가 있더라도 학생 생활지도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상 필요한 경우로서 학생신분인 개인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까지 명찰을 달고 다니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기관 18개 학교 중 이미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여 탈부착식 등으로 변경한 학교를 제외한 11개 학교의 경우 고정식 명찰을 사용하는 이유로 탈부착 명찰의 훼손 및 분실, 학생지도의 어려움, 호명에 따른 교사와 학생의 활발한 소통, 벌점 부과에 따른 학생과의 갈등, 안전사고 예방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 명찰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학교 밖에서까지 ‘사생활 불가침의 영역’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012.4.24. 11진정0181800)

5. 상담사례

Q1. “야, 너는 급식 대상이지?”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엄마입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급식지원을 받기 싫는데 한 폰이 아쉬워 급식지원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심스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담임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야, 넌 급식대상이지”라며 큰소리로 체크를 합니다. 사춘기를 맞은 딸이 힘들 것 같아 담임에게 문자를 보내 유감을 표시하고 아이를 다독겨려 주기를 원했지만 담임은 “이런 사소한 일로 문자하지 말라”며 충분히 주변상황을 보고 말한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Q2. 자녀의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를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에게 누설했습니다.

제 자녀는 평소 예민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정신건강 전수조사에서 위험군으로 나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 문제 때문에 학교를 오가던 중 담임선생님이 제 아이의 정신건강 조사결과를 다른 학부모에게 알리며 제 아이와 어울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더군요.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이고 아무리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아닌가요?

[관련 사례]

-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장애내용) 등 본인이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를 교실에 게시한 사례
- 징계를 공고하면서 징계 대상자 개인의 구체적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
- 학업성적 석차를 공개적 장소에 게시한 사례

조치 및 판단

학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놓은 정보라도 수집 당시 또는 수집 이후 정보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놓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들처럼 학생의 가족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급식지원 여부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관련지침

○ [학생 신상정보 보호 철저] 책임교육과-14771

- 학생 개인의 신상정보, 성적 등 공개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안내(2011.06.27)

6. 관련기사

○ 2015. 6. 16. 한겨레 [경찰,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정보 DB화 추진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142.html)



V.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1. 조례

제15조(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등)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그 정정이나 삭제, 혹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1. 부정확한 경우
2.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3. 정보수집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그 내용이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해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해 학생이 자신의 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정 또는 삭제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제12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국내규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

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존엄성 존중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법적 안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나아가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평온한 유지 및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 평온 및 형성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정보관리통제권)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관리통제권에는 최소한 자기정보접근권, 자기정보정정청구권, 자기정보사용중지청구권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본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개인정보시스템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2003.5.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4. 상담사례

Q1. 생활기록부 사진교체가 어렵나요?

고3인 조카는 대입 원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담임에게 생활기록부 사진교체를 부탁했어요. 하지만, 담임은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저런 사정 다 따지면 어떻게 많은 학생을 상대하냐?”며 단번에 거절했어요. 옆에서 조카가 상심한 것을 보다 못해 정중하게 제가 편지를 써서 조카의 입장과 무례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달라는 내용을 담아 재차 사진교체를 부탁드렸어요. 돌아온 건 “보호자도 아니면서 왜 그러냐?”, “보기에 문제가 없는 사진을 번거롭게 왜 교체하냐”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네요.

조치 및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참고자료

○ 관련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 제2항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 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학생참여단 의견

2015년 학생참여단 회의에서 일선 학교에서 상벌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몇몇 학교에서는 상벌점을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벌점에 대한 정보도 개인정보로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이 분명합니다. 향후 이러한 상벌점 운영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I. 양심·종교의 자유

1.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의 참여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학생의 종교 선전을 제한하는 행위
 6.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2. 해설

「대한민국헌법」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학생이 가진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 조례에서도 학생이 특정한 생각을 강요당하거나 양심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14조** 1. 당사국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나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 발달에 맞는 방식으로 아동을 지도할 권리와 의무를 존중해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2) 국내규범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

만일 법령의 내용이 단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여 내부적인 양심의 형성과 실현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법질서와의 충돌 없이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헌재 2002. 4. 25. 98헌마425등, 판례집 14-1, 351, 362 참조), 비록 법적 강제수단이 없더라도 사실상 내지 간접적인 강제 수단에 의하여 인간 내심과 다른 내용의 실현을 강요하고 인간의 정신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현을 방해한다면, 이 또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8. 10. 30. 2006헌마1401 등, 공보 제145호, 1566 [기각])

대법원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에 대한 침묵을 뜻하는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자신의 종교적인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종교행위의 자유 및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등과 더불어 우리 헌법이 최고의 가치로 상정하고 있는 도덕적·정신적·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고 민주주의체제가 존립하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보다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성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5. 상담사례

Q1. 선생님에게 욕한 적이 없는데 욕을 했다는 진술서를 쓰라고 해요.

미술시간에 선생님에게 욕을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제가 욕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더니, 학생부실로 데려가서 진술서를 쓰라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진술서를 썼는데, 징계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담합니다.

Q2.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과도한 반성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데요. 체육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짜증난다”고 말을 해서 혼도 나고 벌도 받았는데, 계속해서 1주일 동안 반성문을 10장 이상 쓰게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선생님에게 한 말이 아니고 아이들끼리 한 말이라고 하는데, 반성문 뿐만 아니라 진술서도 강요하면서 녹음까지 했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Q3. ‘다시는 교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선도위에서 교내 봉사의 징계 결정을 하면서 "다시는 교칙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재위반시 전학 등의 조치가 있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각서를 꼭 써야 하나요?

조치 및 판단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였거나 잘못을 저지르거나 학교 공동체 윤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교사로서 해당학생에게 훈계나 훈육의 일환으로 반성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 훈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기록케 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반성문의 작성 요구는 양심의 자유 영역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의 양심에 반하여 단지 벌을 피하거나 경감시키는 대가로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육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위 사안 모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반성이나 서약의 강요금지]

학교는 학생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 뉘우침을 고백하게 되는 비교육적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생의 양심에 반하여 단지 벌을 피하거나 경감시키는 대가로서 반성문이나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뉘우침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본래의 교육 목적에서도 벗어나는 일입니다.

6. 관련 자료

○ 종교 과목 편성 및 종교활동 관련 교과부 지침

①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제2007-79호),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제2009-41호)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자율화 세부 추진 계획(2008.04.15)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에 종교 과목 복수 편성과 정규교과 외 종교활동에 학생 자율 참여 원칙을 포함하여 안내하여야 함.

7. 관련기사

○ 2010. 4. 22. 뉴스한국 [대법 ‘학내 종교자유 보장돼야’...종교수업 강요, 학교 배상책임]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0422152542s6421)



II. 의사 표현의 자유

1. 조례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설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의사를 형성하고 그것을 외부로 표현할 정신적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이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학생이 자기가 선택한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 또는 양심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은 적극 장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표현된 의사를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도록 장려하고 학생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의 의사 표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악의적인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과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내의 규범

(1)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민주사회의 법체계 안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된다.

(2) 국내규범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4. 관련 결정례

(1) 판례

헌법재판소

- 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헌재 2005. 11. 24. 2004헌가17).
-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는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성신장과 아울러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여 동화적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며, 나아가 정치·사회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세력을 사회적으로 통합하여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선거와 선거 사이의 기간에

유권자와 그 대표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고, 대의기능이 약화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현대사회에서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인 것이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2)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및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 학생회장 후보등록의 결격 사유인 품행불량이나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는 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학생회장 후보자 추천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다.(2009. 12. 14. 09진차889)

5. 상담사례

Q1. 학교 방송제에 올린 영상물로 인해 징계를 받았어요.

학교방송제에 올린 영상물로 인해 징계를 받았어요. 저는 방송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방송제를 맞아 학교 내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담자는 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평소 학교 기숙사의 잦은 문 고장으로 누구나 쉽게 열 수 있었던 상황을 소재로 ‘○○의 달인’을 연출했어요.

방송제 당일 공연에선 학생들의 일상을 재미코드로 엮어 놓았다는 평을 받았고,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특별한 거부감 없이 즐겁게 감상을 했어요. 하지만, 방송제가 끝난 후 학교에선 영상물 내용이 비교육적이라며 선도위원회를 소집했고, 이번 작품에 참가했던 전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일반 방송에도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듯이 이렇게 징계까지 내려질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사전 교육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요? 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관련 사례]

- 학생회장이 학교 규칙 개정 관련 설문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선도위에 회부됨
- 학교 내에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겠다고 함

조치 및 판단

서명활동, 설문조사, 교내 언론활동, 전단지 배포, 집회 등 학생의 의사표현의 수단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의 의사 표현은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홀로 또는 여럿이 의사를 표현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I. 자치활동의 권리

1. 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⑤ 학생회는 학생 대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임원을 선출할 권리
2. 학생총회, 대의원회의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할 수 있는 권리
3. 납부금 징수, 성금 모금,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
4.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리
5.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 사항을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6. 다른 학교 학생회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활동 내용을 협의할 권리
7.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추천할 권리

⑥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부당하게 학생 자치활동을 금지·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시적인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의 사전 통지, 소명기회의 보장,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수렴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해설

학생은 교육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자치활동의 권리는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등 학생 자치 활동이 자유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 자치 활동이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간섭에 놓여 있지 않은 지 살피고 학생의 자치와 학교 운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여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자치조직의 피선거권을 성적 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학생 자치 조직의 대표 는 학생들의 직접·비밀·보통·평등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 자치 조직은 필요한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 며 행사를 개최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울러 학생 대표 기구인 학생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 권, 의견 개진권, 학생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연합활동권, 담당 교 사 추천권 등을 가집니다.

학생이 자치 활동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만 가 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충분히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학생자치 조직이 설립과 가입에 대한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국내의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 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 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 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2) 국내규범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 상담사례

Q1. 담임선생님이 학급규칙을 정해서 강요해요.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담임선생님이 우리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학급규칙이라면서 지각하면 1000원을 내도록 정하고, 지각비를 내지 않으면 휴대폰을 압수해 가요. 인권침해 아닌가요?

Q2.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이예요.

우리 학교는 학기 초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데 학생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는 대의원 회의만 개최해서 몇몇 학생들 의견을 들었어요. 그리고 대의원회의에서도 모두 두발을 자유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의견을 수렴되지 않고 두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학교 규정에 개정되었어요.

Q3. 학생이라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나요?**Q4. 학급회장에 당선이 되었는데 사회봉사 징계를 받은 일이 있다고 당선 무효라고 합니다.****Q5. 지각비를 받는 것은 인권조례 위반 아닌가요?**

저는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학교의 규정상 등교시간이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임의적으로 등교시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지각비를 내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지각비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지각비를 임의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인권조례 위반 아닌가요?

Q6. 작년에 학폭위 처분을 받았던 것 때문에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요.

중학생 자녀가 학급 임원으로 선출됐는데, 작년에 왕따 가해학생 중 1명과 싸워서 머리를 때리는 바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 처분을 받았던 것 때문에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해요. 자녀는 활발한 편이고, 당시 왕따 피해자였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곧 임원을 재선출할 거라고 해서 답답해요. 1년 전의 징계를 사유로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인권조례 위반이 아닌지요?

[○○고 담임교사가 임의로 정한 지각비 규정에 대한 사례]

- ① ○○고 ○학년 ○반 '지각비 규정' 관련해 다수 학생의 민원이 발생함
- ② 지각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은 강제로 방과후교육에 참여하는 등 전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규정이라며 학급규정 개정 및 해당교사에 대한 지도를 요청함
- ③ 학생의 동의 없이 교사가 임의로 정한 '지각비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이 참여해 정한 규정에 의한 지각비 운영일 경우라도 학생이 감당하기에 과도한 금액의 경우 시정되어야 할 것임

조치 및 판단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금지 또한 제한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장 크게 불만을 드러내는 부분은 교칙의 정당성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과 적절한 논의나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개정 사항을 결정해 놓고 학생에게 무조건 지키라고만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Ⅱ.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 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의견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학교규칙소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2. 해설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자신에게 적용될 규범인 학칙 등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제적으로도 ‘학생에 대한 보살핌은 학생의 자기결정과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이자 실효적인 방안으로써 기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의 목적이 자율성의 신장과 민주 시민의 육성에 있음에 유념하면서, 학생의 미성숙과 같은 막연한 우려를 근거로 학생 참여권을 제한하기 보다는 참여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조례는 학생이 학생회 등 자치 조직을 통해 학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학칙은 학교 내 자치 규범으로서,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학생 대표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해 당사국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행정적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국내법 준수의 범위 안에서 갖도록 해야 한다.

(2) 국내규범

교육기본법

- 제5조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학칙개정절차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4. 관련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 ① 아동권리협약 12조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2009. 7. 20)은 “아동은 학교정책 개발 및 행동규정 이행에 대해 학급회·학생회 및 학교위원회 등에 참여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입법적으로 명문화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동의 행동을 규정하는 교칙의 경우, 학생들에게 규범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한 학생들의 권리와 관계가 있는 교칙내용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교칙개정 활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동권리 협약」 제12조 및 동 조항 「일반논평」,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보장하는 바와 같이 학생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12. 14. 09진차889)
- ② 학생두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학생인권 보호에 합치되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여부와 정도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일차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생이 교사, 학부모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최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2005.06.27. 학생두발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학생두발 제한 관련 인권침해))

5. 상담사례

Q1. 학칙 개정 관련해서 스티커 조사를 해 놓고 반영을 안 해요.

학칙을 바꿀 때는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문을 하기는 했었어요. 교문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두발 자유를 해야 된다는 표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반영은 안 한 것 같아요. 현재 두발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Q2. 학부모 대표 의견만 수렴해서 학칙을 개정하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학부모 대표들의 의견만 수렴해 학칙을 개정했네요. 그래놓고 그 학교규정을 잘 지키겠다는 것에 동의를 한다는, 거의 각서 같은 ‘가정통신문’을 받았어요. 학교규칙매뉴얼을 찾아보니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수렴하도록 되어있는데, 안내며 공청회 한번 없이 의견수렴해서 학칙을 개정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아무리 회의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매주 금요일 6교시에 자치회의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를 결정해도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학생들이 겨울에 구두만 신으면 너무 춥고 미끄러워 위험하다고 다른 신발도 신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학교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도 학교는 묵묵부답이에요. 대의원회의에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요.

Q4. 교사인데, 교장이 학생 설문을 못하게 하네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번에 학칙 개정을 하게 되어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려고 했는데 교장이 이를 알고 못하게 하네요. 학생설문은 민주적인 학칙개정을 위해 아주 기초적인 절차 아닌가요? 교장은 학생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교칙의 개정에는 관심이 없고 기존의 관습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것 같아 화가 납니다.

[관련 사례]

- 학칙 개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학생을 제재하는 경우
-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학급회의와 학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번복하는 경우
- 학생회 소속 학생 등 소수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대다수 학생들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경우
- 학생들이 청원하는데도 학칙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교사의 행위를 교장, 교감 등이 제지하는 경우

조치 및 판단

학교규정 제·개정 시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참고자료

- [학교규칙운영매뉴얼] (교과부 2014. 2)

1.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학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학교장은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학교규칙이 전환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학교규칙 제·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거나 새로운 시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 토론회 개최
	시안 마련	▶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안 마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3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3.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가. 방법 및 내용

- 원칙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하며, 7인 내외로 구성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전교학생회장단 임원의 일부도 제·개정위원이 될 수 있다. •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나. 유의사항

- 제·개정위원회는 학년·학기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급 등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의견이 실질적이고 폭넓게 반영되도록 한다.
- 학생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학생 대표 등 학생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며,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조정한다.

2)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가. 방법 및 내용

- 제·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학칙 개정을 요청한다.

나. 유의사항

- 학부모, 교원에 의한 발의는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학생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제·개정안 발의는 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지나치게 잦은 개정 발의는 지양하도록 한다.
- 학년말에는 당해 연도 학칙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3)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가.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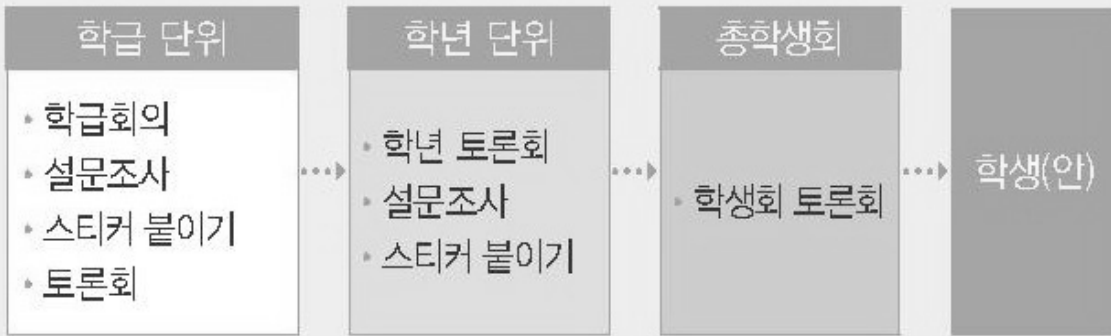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 방법 : 제·개정위원회가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생 :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단, 의견수렴과정은 학교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 학부모 :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원 :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 학생·학부모·교원 : 토론회 실시

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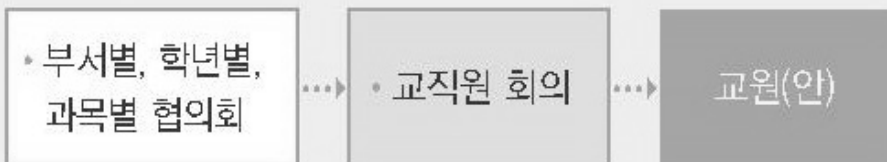
- 제·개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 하며, 설문조사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생활지도 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조항 등은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 학생·학부모·교원 누구나 토론회를 방청할 수 있으며, 발언권을 갖는다.

의견 수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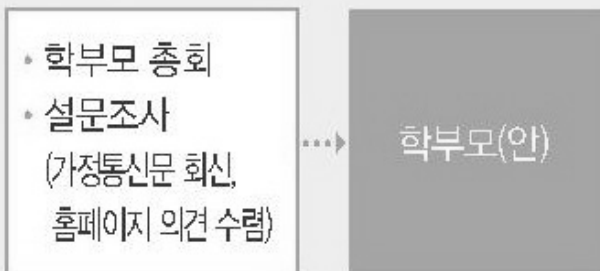
▶ 학생



▶ 교원



▶ 학부모



▶ 학생 · 교원 · 학부모



6. 관련기사

- ① 2012. 10. 20. 서울신문 [학칙 개정 자율권 줬더니 교장의 징벌권 대폭 강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2000904>)
- ② 2012.09.26. 뉴시스 [학생자치활동 여건 열악...학생회실 설치 31.8%에 그쳐]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26_0011477211&cID=10201&pID=10200)
- ③ 2015. 7. 27. 한겨레 [수업중 스마트폰 걸어야 하나? 학생·교사·학부모 함께 고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2053.html>)



Ⅲ.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 조례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의 운영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조직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경우 학생의 참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해설

조례는 학생의 정책 결정 참여권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와 교육자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는 학교와 교육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한을 부여받을 때, 그에 걸맞는 성숙한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책임 의식 또한 길러질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권리에 맞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사와 보호자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는 장치(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사용, 건의사항 및 의견 수렴함 설치, 설문조사,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정례적인 학생대표와의 만남, 학교 운영위원회 참석 등)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육감도 교육청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조례의 제3장에 규정된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입니다.

형식적, 명목적, 장식적 참여는 참여가 아닙니다. 참여는 변화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가 좌절되지 않을 때 더욱 활성화됩니다. 학생의 참여는 참여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참여를 통해 개진된 학생 의견을 학교정책 수립입니다. 학교규칙 제·개정 등의 과정에서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3. 국내외 규범

초·중등교육법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I.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1. 조례

제21조(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가정위기, 비행일탈 등의 각종 위기 상황 극복과 적성발견,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 근로학생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상담을 제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2. 해설

본 조항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교육 받을 권리’와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명문화한 내용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됩니다. 특히 빈곤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 등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포함한 여러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에 특별한 교육적 돌봄과 지원이 요청됩니다. 이 조항은 상담과 같은 지원을 받을 권리,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을 위한 우선적 예산 배정, 구체적 제도 수립 및 정비, 지역 사회의 유관 기관과의 협조, 보호자 교육 및 보호자의 참여 협력 유도 프로그램 개발 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호자 참여 협력 프로그램 운용 규정은 학생지도에 있어 보호자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2) 국내규범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담사례

Q1. 자살시도가 있었던 학생이 상담실 우선상담대상에서 제외됐대요.

저희 반 아이가 왕따 피해를 겪다가 호전되어 1학기 말 심리검사에서는 고위험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실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리려는 걸 친구들이 막은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상담실에서도 알고 계시는데 상담선생님은 “1학기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오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도 보아야 하지 않느냐”고 상담을 잘 안 해주세요. 자꾸 사설기관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만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인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관련 사례]

- 학습부진, 가정위기 등의 각종 위기상황에 대한 상담 시스템이 없는 경우
-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존의 지역사회 관계기관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

조치 및 판단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차별을 포함한 여러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에 특별한 교육적 돌봄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노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요청할 권리가 학생에게 있습니다.



II.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 조례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설

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다시 학생의 인권으로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각종 소음 및 유해업소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의무도 아울러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비치 및 공간 확보는 학생을 위한 문화적 환경 구축에 해당합니다. 또 학생들의 탈의 공간 및 휴게공간의 마련은 학생의 인격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3. 국내의 규범

(1) 국제규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국내규범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상담사례

Q1. 행정실에서 교실에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저희 학교는 에어컨을 행정실에서 켤 수 있는 에어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에만 틀어드리고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는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트는 것도 드문 일입니다. 저희는 학교생활을 편하기 하기위해 돈을 내고 학교 다니는데 돈을 내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Q2. 학교에 에어컨, 선풍기가 적어서 힘들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하복 와이셔츠 단추를 몇 개 풀고 있기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께 혼납니다. 에어컨이라도 틀어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선풍기라도 많으면 말을 안 할 테지만, 교실에 선풍기 2개입니다. 40여명의 학생들이 선풍기 2개로 여름을 버티는 극한의 체험을 시켜주는 학교가 또 어디 있을까요?

Q3. 체육준비실에서 담배냄새가 너무 나요..

1., 2층 체육관 쪽 복도와 체육자료실에서 담배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선생님 말씀이나 규칙에 대해 들을 때는 40분 내내 체육준비실에 있습니다. 속이 아플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련 사례]

-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
- 학교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을 장기적 소음과 먼지 등의 공해에 노출시키는 경우
- 화장실이 부족하고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 교실이 너무 비좁거나 채광이 좋지 않은 등 교실이 일상적 수업 및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운동장이 너무 좁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거나 기타 문예활동을 하기에 비좁은 경우
- 다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경우
- 학교 내에서 흡연 및 음주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조치 및 판단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여 합니다. 학생이 청결한 환경 조성 및 냉난방 장치의 적절한 이용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관련기사

- ① 2012.7.9. 동아일보 [“교장선생님, 에어컨 켜줘요”...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안돼”]
(<http://news.donga.com/3/all/20120709/47623781/1>)
- ② 2012.5.23. 중부일보 [학교운동장 적정규모로 설치돼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9830>)



Ⅲ. 급식에 관한 권리

1. 조례

- 제23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급식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의무교육과정에서의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설

본 조항은 급식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인권으로서 선언한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에게는 충분한 영양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학습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먹을 권리는 중요합니다. 또한 친환경 급식, 직영급식, 의무 교육과정에서의 무상 급식 노력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한 권리는 급식을 단지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급식에 대한 권리는 급식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학생의 의견 존중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 사회·경제적 차이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 무상교육의 취지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무상급식 학생의 학습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3. 관련기사

- ① 2015. 10. 5. 조선일보 [충암고 교사, 학교 급식 비리 폭로...“음식 부족해, 학생들 뛰어다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5/2015100501160.html)
- ② 2015. 10. 21. 연합뉴스 [하동군·학부모단체 '무상급식 원상회복' 합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1/0200000000AKR2015102102180052.HTML?input=1195m>)



IV. 건강에 관한 권리

1. 조례

제24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설

본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제1항에 의거하여 학생 건강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이나 수업 불참에도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여학생의 권리를 조례 수준에서 명문화하였다. 지금도 생리공결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 제도가 학교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권리는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 증진을 이유로 한 보건사업을 실시하더라도 학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낙인감을 줄 수 있는 조치, 전문적 진단 없이 등교 정지 조치,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강제적 의료행위 등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학교는 일차적, 응급적인 치료가 가능한 요건인 보건실과 보건교사, 관련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학생들이 편하게 보건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절실한 지역인데도 보건실조차 없는 소외 지역 학교에 보건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유엔아동인권선언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내규범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 관련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여성이 생리통을 겪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또한 개인별로 차이는 있으나,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겪는 고통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생활지도의 어려움, 악용우려 등을 이유로 생리로 인한 결석을 ‘병결’ 혹은 ‘기타결석’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석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성적처리는 이전 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선학교의 이러한 관행은 첫째, 생리통은 드러내지 말고 단지 개인적으로 참아야 하는 것, 혹은 ‘질병’에 걸린 상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고, 둘째, 학생생활기록부상 결석 처리 및 낮은 성적으로 인한 대학입시에서의 불이익 우려로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신체적 고통을 견디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 헌장 전문에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적극적 의미로 보아야 하고, 여성의 생리통을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보면서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출결상황 및 성적인정에 민감한 우리 현실에서 ‘병결’ 혹은 ‘기타 결석’ 처리 및 결시시 이전성적의 80%만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생리적 현상중의 하나이자 의학적으로도 원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생리통에 의한 결석임을 고려할 때 그 불이익 정도가 지나치게 크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일선 학교의 감독기관인 피진정인이 피감독 학교에서의 위와 같은 관행을 방지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2005. 12. 26.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기타차별(생리결석))

5. 관련기사

- 2015. 5. 25. 매일경제 [학교사고 년10만건 보건교사가 없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97963>)



1. 조례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피징계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의 결정 및 그 집행의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해설

이 조항은 학생이 폭력이나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도 인격을 존중받고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사와 징계의 전 과정에서는 학생의 나이와 성별, 성적지향, 인종·문화적 배경, 건강과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추가적인 피해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사유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권 등을 통해 징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징계가 처벌이나 응징 자체가 아니라 대상 학생의 성찰, 회복,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목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의 협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징계를 공고하지 않도록 한 것도 징계의 목표가 회복과 복귀에 있기에 요청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징계 이후 학생의 심리적 위축, 학습 결손, 관계 회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법적 징계뿐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여타의 방식에 있어서도 학생의 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지 살펴 깊게 살펴보다야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불가피하게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별점의 기준과 절차, 부과 방법, 대상 학생의 소명 방식 등에 있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해야 합니다.

3. 국내외 규범

(1) 국제규범

아동권리협약

제12조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2) 국내규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관련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2항은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피진정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는 위 학교와 같이 클린스쿨제(상·벌점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 위반하여 일정 기준의 벌점을 초과한 학생들에 대해 퇴학예정 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법령규정을 위반하여 피해자 조○○ 등에 대하여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학예정 조치 및 전학권고를 함으로써 동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2008. 04. 03. 07진인2330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 ②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특별교육 이수에 처하면서 진정인의 학부모로부터 차후 교칙을 한 건이라도 위반할 시에는 학생선도협의회 협의 없이 퇴학처분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 실제로 진정인 교칙을 위반하자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퇴학처분한 바, 이는 규정에 없는 임의의 절차로 퇴학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징계절차 위반은 학생징계시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항을 위반한 것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가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바, 피진정인의 주장을 볼 때 퇴학처분시 위와 같은 임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00고등학교의 관행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학생선도협의회를 개최하여 진정인의 퇴학처분을 재심의 할 것과 위와 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2007.1.15. 06진인3067 부당 퇴학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교육청 조치

- ① [서울시 ○○고 흡연4회로 인한 퇴학처분 취소 사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에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흡연 3회로 퇴학예정 및 전학권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따른 단계별 절차 중 10일간의 출석정지가 누락된 것으로 보임을 안내.(2011.7.19 재심청구 시 퇴학처분 취소하겠다는 학교답변 받음)
서울시교육청 2011.4.27 책임교육과 9895「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징계규정 적용시 유의사항」참조
- ② [경기도 ○○고 벌점누적, 흡연 등으로 인한 퇴학처분 취소 사례]
2011. 3. 경기 남양주 ○○고 개교

2011. 5. 별점누적 학생들에게 “10일안에 자퇴서를 내지 않으면 퇴학처리하겠다.”고 강요해 18명 학생이 ○○○ 자퇴

2011. 7. 인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 꾸려 활동
교육청과 학교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교육청 앞에서 ○○○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2011. 7. 11 학교와 대책위 면담

면담 이후 ○○○에서 18명의 자퇴생 전원에게 복학 희망여부를 조사하는 통지서 발송 및 개별 면담

※ 면담결과

- ① 절차상의 문제 확인 ② 복학 약속 ③ 수업시수와 진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 보충 약속

5. 상담사례

Q1. 흡연 3회로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하라고 합니다.

- 흡연 3회로 특별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 적발로 1회 추가되어 흡연 4회로 퇴학처분 위기에 있어요. 저의 아이가 잘못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흡연이 말처럼 쉽게 끊을 수 있거나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학생의 건강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을 징계로 접근해 퇴학시킨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흡연 외엔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밝으며 성적도 괜찮아 대학에 대한 꿈도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름방학 전에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 시키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2주 안에 이사를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위장전입을 할 수도 없고 앞이 캄캄합니다.

Q2. 지각이나 두발로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해요.

- 학교에서 일 년에 2회씩 생활점검을 하는데, 두발로 걸리면 벌점을 부과하고,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벌금도 걷었어요. 며칠 후에 생활점검을 할 거라고 담임선생님이 예고하셔서 불안해요. 그리고 우리 반은 지각을 해도 학급비를 내요.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Q3. 선도위원회 결과를 전화로 설명하면서 내일부터 출석정지라고 합니다.

- 중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회사 사정상 우리 아이와 관련된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오늘 전화로 출석정지 결정이 있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합니다. 개인 사정상 선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와 어떤 경위로 결정이 있었는지, 혹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했지만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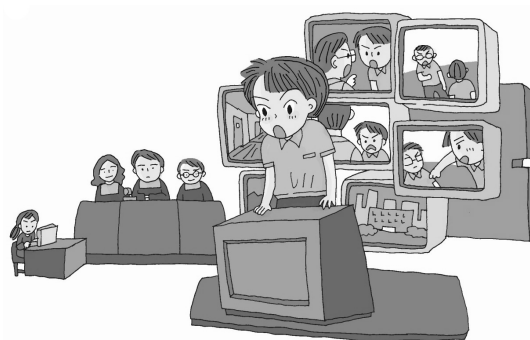
- 아무 설명도 없이 내일 선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 상습적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간소화시켜 해당 학생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성문화된 징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건을 맡은 교사마다 처리 방식과 징계의 수위가 달라지는 경우
- 징계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 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부여하는 경우
- 조사가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조사 중인 사건을 이유로 또는 징계 사실만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전학이나 자퇴를 종용하는 경우

조치 및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충분한 방어권과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권조례에서도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관련기사

- ① 2011. 7. 11. 한겨레 [별점 앞세워 자퇴 강요...‘가운고 학생의 눈물’]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86850.html>)
- ② 2011. 7. 7. 민중언론참세상 [가운고 강제 자퇴생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2314>)
- ③ 011. 7. 7. nsp통신 [가운고공동대책위, ‘무더기 자퇴’가 진정한 교육인가?]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3664>)
- ④ 2011. 7. 12. GNnet [가운고, 자퇴한 18명학생 모두 검토키]
(http://gurinet.org/sub_read.html?section=section5&uid=10451)



I. 권리를 지킬 권리

1. 조례

제26조(권리를 지킬 권리)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 해설

모든 사람은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보장된 인권이 충분히 실현된 질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당한 법률이나 명령, 지침 등에 따르지 않고 인권의 보편적 요청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의 중지나 재발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누립니다. 본 조항은 제27조의 상담 및 조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학생이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그러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학생이 부당한 힘의 행사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제보, 증언, 증거물 제출 등을 도왔다는 이유로도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국내외 규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4. 상담사례

Q1. 체벌 신고 이후 보복성 체벌이 계속되고 있어요.

초1 자녀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두 달 간 따귀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육지원청에 문제제기를 했고, 장학사님 주선으로 교장·교감선생님을 면담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체벌이 발생했고, 꼬집혀서 멍 든 부분, 손톱으로 긁힌 부분도 생겼습니다. 상처까지 남게 더 심해지니까 보복성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학생은 철저한 약자네요.

조치 및 판단

학생은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권리,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의 중지나 재발방지를 요구할 권리를 누립니다. 학교는 학생이 처벌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부당한 힘의 행사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II.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1. 조례

제27조(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 관련 사항에 관하여 학교의 장, 교육청, 지역교육청 그 밖의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 등은 제2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해설

본 조항은 헌법 제26조에 의해서 보장된 청원권을 학생의 인권으로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 마련된 구제절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원권을 행사했을 때 학교는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뿐 아니라 이를 목격하거나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문서 등으로 관계기관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1항은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구제절차에 대해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 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사회구조나 문화에 따라 누구나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소수자 학생이 될 수 있음에 유념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수자 학생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전문 상담 등의 적절한 지원 및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의 인권은 당사자 또는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 그의 문화적 정체성을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보호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2. 해설

본 조항은 제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구체화하여 소수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빈곤 학생, 장

에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근로학생 등 소수자 학생(이하 ‘소수자 학생’이라 한다)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의 적절한 보장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소수자 학생이 동등한 배움의 권리와 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취해야 하며, 그 방식은 소수자 학생이 처한 특성을 사려 깊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은 조례 제21조 학교복지에 관한 권리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수자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해소를 위한 인권교육프로그램 마련, 소수자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 마련, 전문 상담 등의 조력,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서의 편의 제공 및 교육적 지원, 가정형편으로 빈손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의무, 다문화가정·이주민가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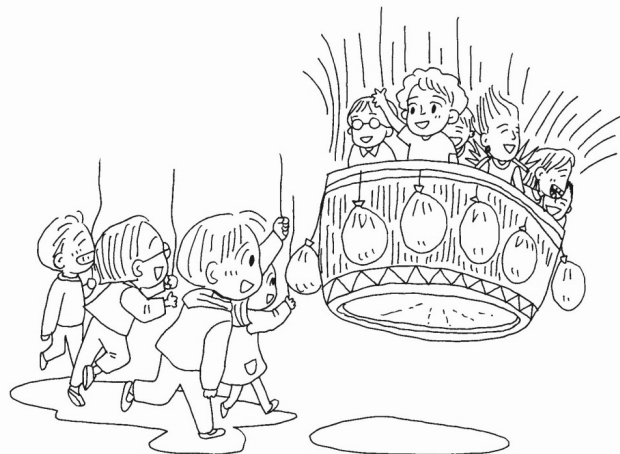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이 교육활동에 있어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또 보호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해야 하며 전·입학 기회를 학교가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정보나 상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될 경우 추가적인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인의 동의 없는 누설은 금지됩니다. 보호자에게 알리는 경우, 자살 미수 등 학생의 안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학생에게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합니다.

3. 결정례

국가인권위원회

학습권 보호는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점과 학습권 보호에 대한 정부나 교육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2010. 12. 6.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Ⅰ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 안내

학생인권침해 상담 안내

● 권역별 상담연락처

권역	지역구	전화번호
1	동대문, 중랑, 광진, 성동, 강동, 송파	02)3999-081
2	마포, 서대문, 은평, 강서, 양천	02)3999-083
3	구로, 금천, 영등포, 강남, 서초, 관악, 동작	02)3999-084
4	용산, 종로, 중구, 노원, 도봉, 강북, 성북	02)3999-082

● 전화상담

- 이용시간 : 월 ~ 목 09:00 ~ 18:00, 금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 우리 센터는 각 권역별 담당 인권조사관이 학생인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방문상담

- 이용시간 : 월 ~ 목 09:00 ~ 18:00, 금 08: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 우리 센터를 직접 찾아오시면 학생인권상담하실 수 있으며, 가급적 미리 전화로 예약하시면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담

- 우리 센터 홈페이지(studentrights.sen.go.kr) 「신고 상담」 게시판을 통한 학생인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구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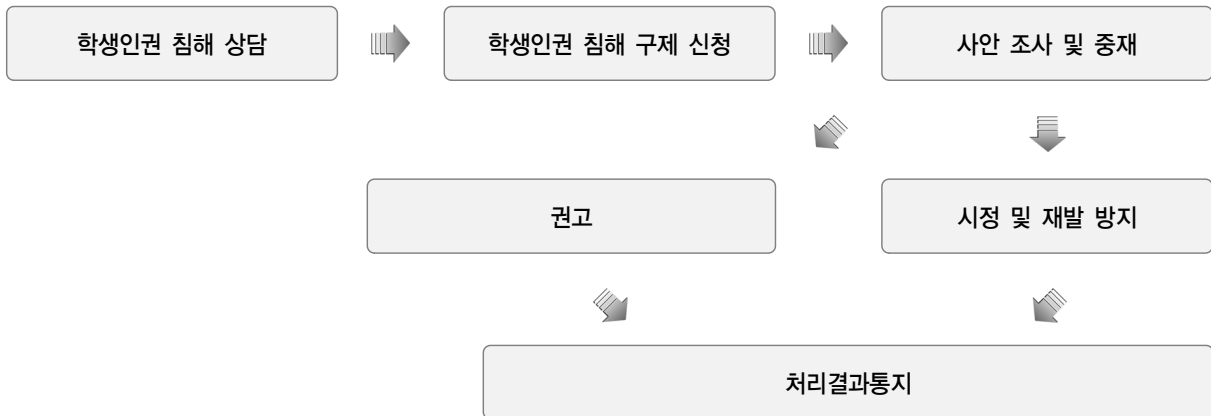
● 권리구제신청 절차

-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studentrights.sen.go.kr) 「신고 상담」에서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합니다.
- ② 아래 안내된 권리구제접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서울교육신문고 접수 시 학생인권침해로 판단되면 권리구제 절차로 전환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권리구제접수 방법

전자우편	singo@sen.go.kr
우편/방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03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학교보건진흥원 415호
팩스	02)3999-789
서울교육신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교육신문고」(www.sen.go.kr)

● 권리구제절차 안내



청렴(韓)서울교육 

청렴무결점 운동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약속드립니다.

〈청렴한 서울교육 신고방〉

클린신고 전화: 02) 1588-026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문고: cleanedu@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지도/기획

이근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재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정영철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박종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사무관
박옥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주무관

□ 편집/검토

하형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이동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박은경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최지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학생인권상담 사례집

인쇄일 : 2015년 12월

발행일 : 2015년 12월

발행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학생인권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http://studentrights.sen.go.kr>
